

[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악사 중단기우량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나. 변경 시행일 : 2016년 12월 29일

다. 변경 내용 :

- 환매수수료 삭제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금 유보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운용성과 등 업데이트

[신탁계약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② (생략)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이익분배)	① ~ ② (생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u>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u> 1. <u>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u> 2. <u>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u>
제41조(환매수수료)	①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	삭제

	<p>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Class A, A-F, C, C-E, C-I, C-W, C-P, S 수익증권 :</p> <p>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p> <p>2. Class C-P2, C-PI, S-P 수익증권 : 해당 사항 없음</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p>①~③ (생략)</p>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제50조제3항에 의하여 게시한 날 또는 통보된 날을 의미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제50조제3항에 의하여 게시한 날 또는 통보된 날을 의미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①~② (생략)</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투자신탁순자산총액</u>의</p>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⑤ (생략)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⑤ (현행과 같음)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 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10. 생략</p> <p>③~⑥ 생략</p> <p>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⑫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u>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u>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10. 현행과 같음</p> <p>③~⑥ 현행과 같음</p> <p>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u>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p> <p>⑧~⑫ 현행과 같음</p>
부칙	-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일로 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4) 환매수수료 Class A, Class A-F,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W, Class C-P, Class S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lass C-P2, Class C-PI, Class S-P : 해당 사항 없음	(4) 환매수수료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Class A, Class A-F,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W, Class C-P, Class S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lass C-P2, Class C-PI, Class S-P :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삭제 - 다른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삭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매3개월)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매3개월)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u>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u>

		<p><u>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u></p> <p>※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12월 15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p> <p>-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p> <p>-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인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p>		<p>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p>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세전 기준)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갱신 라. 운용자산 규모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 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	-	법령 개정내용으로 업데이트 등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환매수수료 삭제 - 보수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